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6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	3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10. 28.
-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따라 낮은 수입 대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91조의25) ○ 가입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요건 충족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요건 충족 ○ 요건 -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 계약기간이 3년일 것 ○ 특례내용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기타 -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배제 ○ 적용기한(가입일 기준) - 2028년 12월 31일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제89조의2) ○ 대상 :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ISA,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도약계좌 등	□ 청년미래적금 추가 ○ 대상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의무자 : 특례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자료 :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제129 조의2) ○ 대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 가목돈마련저축, ISA,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신 설> ○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 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 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청년미래적금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청년미래적금 추가 ○ 조세특례 제한 대상: (현행과 같음) -청년미래적금 ○ (현행과 같음)

* 정태호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2)

☐ 개정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하여 정부가 새롭게 설계한 청
년미래적금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로,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現 3
~6%) 확대 필요성, 소상공인과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① 정부 기여금을 6% 또는 12%로 확대하고, ②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여 직전 과
세기간 소득이 없는 청년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설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2026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비교표: 별첨).

개정안 제89조의2 및 제129조의2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를 전제로, ① 금융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우대 저축자료 대상¹⁾과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제한 대상²⁾에 각각 청년미래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 청년은 통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³⁾,

신체적·정신적으로는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지만 2000년대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인한 제한된 취업 기회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임시 일자리, 또한 이에 따른 자산 축적 기회의 부재 등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에 반해 부동산 등 기존 자산가격은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 등을 포기하는 등 이른바

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 [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공제금·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제과의 납입금액·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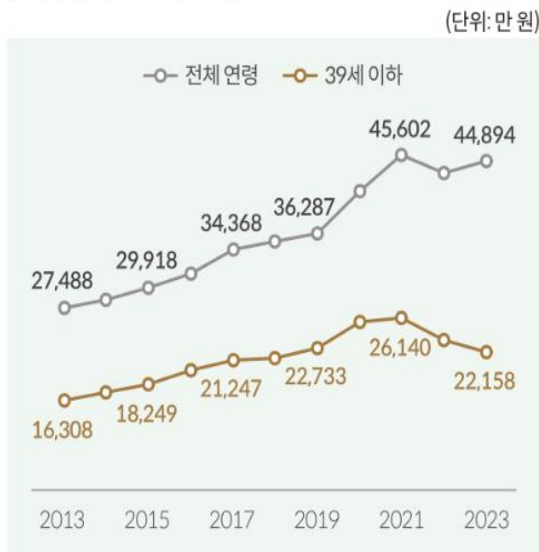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삼포세대” 또는 “N포세대” 등의 자조적인 용어가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하여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소요되며, 초봉이 월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중 53.5%로 나타나고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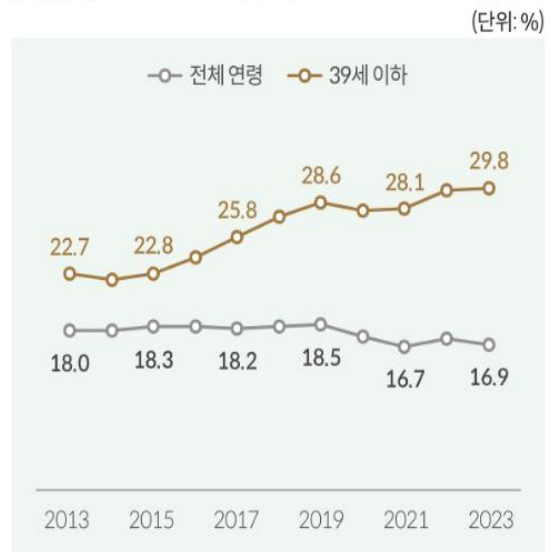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⁵⁾에 따르면, 청년 가구는 자산 증가세 둔화와 부채 비율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도 낮은 데다 향후 자산 증가 가능성도 불확실해 자산형성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 1] 청년가구의 순자산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그림 2] 청년가구의 부채/자산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은 꾸준히 요청되는 것으로 보이고, 세제지원의 일환으

4)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5. 7.

5) 국회예산정책처, ‘청년도약계좌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2025. 6.12.

로서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들에게 소비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저축 유인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기여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수단으로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융위원회⁶⁾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가입인원(누적) 223만 명 수준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 및 납입액 현황]

(누적, 천명,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8.
가입자 수	511	1,572	2,229
납입액	11,977	92,989	151,502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청년 저축상품의 잦은 정책변경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과거 유사한 목적으로 2022년 신설하였던 청년희망적금은 2023년 청년도약계좌로 개편되었는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 3년만에 개정안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개편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6) 금융위원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보도자료. 2024. 12. 27.

[청년 자산 형성 상품 비교]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안)
특 례 요 건	연령	만 19~34세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산입)	좌동	좌동
	소득 요건	총급여 36백만원 (종합소득 26백만원) 이하	총급여 75백만원 (종합소득 63백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23년) / 250%('24년~)	① (일반형) 총급여 75백 만원(종합소득 63백만원) 이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대표자 ② (우대형) ①요건 + 중소 기업 채용 후 6개월 이내 가입 및 3년 근속 + (①, ② 공통) 가구소득 중위 200%
	가입 자격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배제	좌동	좌동
	계약 기간	2년	5년 * '25년부터 3년이상 가입시 세제혜택 미추징	3년
	납입 한도	연 600만원	연 840만원	연 600만원
	납입 한도	연 600만원	연 840만원	연 600만원
혜 택	세제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예산	월 납입금액의 2~4% 매칭	월 납입금액의 3~6% 매칭	① (일반형) 6% 매칭 ② (우대형) 12% 매칭
세액 추징		-	가입 5년 이내 해지 → '25년부터 3년으로 완화	가입 3년 이내 해지
일몰 기한		'22.12.31.까지 가입분	'25.12.31.까지 가입분	'28.12.31까지 가입분

자료: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61